|  |  |  |
| --- | --- | --- |
|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규범에 관한 통지**  국식약감식[2010]34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북경시, 복건성 위생청(국):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관리 및 샘플검사 업무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에 의거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규범》을 제정하고, 인쇄 배포하므로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0년 8월 23일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및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 규범의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등의 법률, 법규 및 장정에 의거하여 본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는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식품(원료, 반제품 및 완성품 포함),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 요식서비스 장소와 환경 등에 대해 표본추출 및 검사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제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를 전개하면서 법, 과학적,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요식서비스 안전샘플검사 감독은 반드시 원 비용가격에 표본을 구매해야 하며 피 샘플검사 단위에 검사비 및 기타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2장 기획 및 방안**  **제5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의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주요 식품 원재료 및 부재료  (2)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식품첨가제와 식품관련제품  (3) 요식서비스 식품가공 경영의 중점 연결부문  (4) 식중독사건 보고가 빈번한 경영방식과 영업장소  (5) 인체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가하고 그 안전성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물질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국가 식품안전위험 검측 결과에 근거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 관리부문과 식품안전 위험을 통보하고, 식품안전조사와 평가결과 및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 필요에 따라 국가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계획을 제정한다.  **제7조**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국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계획과 본 지역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관리 업무 중 발견한 문제에 근거하여, 정확한 본 구역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를 전개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규정한 기한 내에 본 지역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방안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방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표본추출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리기구, 책임자 및 그 표본추출 책임구역 등  (2) 검사임무를 맡는 기술기구, 책임자 및 책임지는 검사 업무 등  (3) 표본 추출 종류, 출처, 횟수, 빈도와 검사항목 등  (4) 표본채취 방법, 추출 표본의 양, 표본 포장, 전달 및 저장 운반조건 등  (5) 검사방법 표준과 검사 근거 또는 기타 판정표준 등  (6) 결과 보고 및 보고 기구  (7) 완성 시기와 결과보고 일시  **제9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조사평가 및 샘플검사 감독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적시에 식품안전조사와 평가집행 과정 중 발견되는 요식서비스 식품안전성 위험을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한다. 성급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은 통보에 근거하여 중점 지역, 중점 부문, 중점 제품 및 중점 위험요소를 확정하고 즉시 감독샘플검사를 전개해야 한다.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중 발견되는 문제와 위험에 근거하여 사회경제발전의 수요와 결합하고 적시에 식품안전 조사와 평가 실시 구역, 부문, 품종, 항목과 빈도 등을 조정한다.  **제10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와 법 집행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표본 또는 순서에 따라 진행된 재검사에 다시 불합격한 표본에 대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3장 표본추출**  **제11조** 샘플검사 감독은 추출과 검사를 분리하여 시행한다. 표본추출은 주로 현지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 또는 그 법 집행 기구가 책임진다. 검사임무는 주로 법에 의거하여 자격인증을 획득한 식품검사기구가 책임진다. 필요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검사기구와 협조하여 표본추출 및 표본 예비처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표본추출 인원은 2명보다 적을 수 없다. 표본추출 인원은 표본추출 전 반드시 피 샘플검사 단위에 증거문건과 샘플검사 감독 통지서를 제시하는 동시에 감독샘플검사의 성질과 표본추출 내용 등을 고지한다.  표본추출인원은 반드시 《제품표본 추출기록》또는 《비제품표본 추출기록》을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는 동시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과 피 샘플검사단위의 인감을 각각 날인해야 하며, 추출인원과 피 샘플검사 단위의 현장인원의 서명을 날인한다. 피 샘플검사 단위가 인감이 없거나 현장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피 샘플검사단위의 책임자나 그 수권인원이 서명함으로써 확인한다.  현장에서 표본을 추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반드시 피 샘플검사단위는 표본추출 미결증명을 발급한다.  **제13조** 표본추출 시, 표본 추출량은 반드시 필요 검사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비교적 균등한 표본의 경우, 현장에서 3등분 하고, 한 부분을 검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두 부분은 표본을 보관하는 동시에 표본분리 조작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특별히 표본 추출량을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14조** 피 샘플검사 단위가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본추출을 거절할 수 있다.  (1) 표본추출 인원이 2인에 미달되는 경우  (2) 표본추출인원이 반드시 지녀야 할 감독샘플검사 통지서 및 증거문건 등의 자료를 완비하지 않은 경우  (3) 피 샘플검사단위 또는 샘플검사품종 등이 감독샘플검사통지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샘플검사 일시가 감독샘플검사통지서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15조** 피 샘플검사단위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표본추출을 거절하면, 표본추출 인원은 반드시 피 샘플검사 단위에 표본추출 거절 이후의 결과와 처리조치를 고지한다. 만약 피 샘플검사 단위가 다시 표본추출을 거절하면, 표본추출 인원은 현장에서 표본추출 거절 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야 하고 즉시 현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현지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은 샘플검사 불합격 처리한다.  **제16조** 추출된 표본은 반드시 표본의 물리, 화학과 생물학 등의 특성에 따라, 또는 그 꼬리표 및 표지에 표기되어 있는 조건으로 저장, 운반함으로써 표본이 검사 전의 완전성과 원시성을 보전해야 한다. 표본의 운반과정 중 반드시 온도, 습도, 측량표를 준비하고 온도, 습도 측량기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4장 검 사**  **제17조** 검사담당기구는 반드시 식품검사기구 자격을 갖추는 동시에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 방안을 제정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선발 및 공고한다.  **제18조** 식품검사기구가 표본을 받을 시, 반드시 전담 인력의 책임하에 표본의 외관, 상태, 밀봉의 파손 및 기타 검사결과 또는 종합적으로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을 검사, 기록하는 동시에 표본과 표본채취 기록의 상호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표본과 예비표본에 각각 표식을 한 후 보관한다. 필요 시, 표본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분리포장 또는 포장 일련번호를 새로 매길 수 있다.  **제19조** 표본의 예비처리는 반드시 검사방법 표준이 요구하는 대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표본처리량은 반드시 방법상 검측 한계 요구치를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제20조** 식품검사기구는 반드시 검사 규정을 따라야 하며 샘플검사 감독 방안에서 규정하는 방법과 근거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고 판정한다. 검사방법은 식품안전 국가 표준에서 규정하는 방법 또는 기타 법률효력을 가진 검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제21조** 검사를 맡은 식품검사기구는 반드시 검측 방법이 요구하는 대로 방법학 검증을 진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표준조작 순서의 실험실을 설립하는 동시에 식품검사기구 기술책임자의 심사를 거쳐 발표된다.  **제22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 중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인정하는 신속 검측방법을 사용하여 초보단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초보단계 심사 결과에 대해 유관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임시 통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식품안전법》 제6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신속 검측방법의 인증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신속 검측방법이 인증을 거치게 되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공고한다.  **제23조** 식품검사기구가 위탁검사부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식 서비스업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일부를 분담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24조** 검사과정 중 표본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기타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반드시 사실에 따라 기록 해야 하며, 식품검사기구의 품질책임자의 서명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25조** 검사 데이터 처리는 반드시 측량오차와 데이터 처리 기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 검사결과가 표준의 임계에 달하는 경우, 검사를 담당하는 식품검사 기구는 실험실의 표본여분을 선택하여 재 검사를 진행하고, 재 검사 결과를 최종 결과로 한다.  **제27조** 식품검사기구는 검사결과를 즉시 검사를 위탁한 식품약품관리감독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도 실험보고를 첨부해야 한다.  **제28조** 피 샘플검사 단위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검사결과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 검사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분에 서면으로 재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 검사는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9조** 성급 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하달하는 샘플검사 감독의 임무를 집행하며 관련요구에 따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표본등기집계표, 표본검사결과 집계표, 불합격 표본 총 집계표와 불합격 피 검사단위 목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샘플검사 감독 년도 총 결산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제30조** 샘플검사 감독의 결과의 공개는 반드시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중 식품안전정보 관리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동시에 본 규범이 규정한 순서에 따라 불합격표본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 발표할 수 있다.  샘플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이 기타 감독관리부문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법률법규요건에 따라 샘플검사결과를 유관감독관리부문에 통보한다.  **제31조**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유관요구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집행정황에 대해 성과를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총결산 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자체평가 보고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프로젝트 완성 3개월 이내에 프로젝트 성과평가 및 심사를 전개한다.  **제32조** 샘플검사 감독에 참여한 직원은 국가법률법규 및 직업도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 해야 하며, 허위 날조해서는 안 된다. 검사인원은 독립적으로 적시에 임무를 완성하고 검사수치 및 결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증해야 하며, 허위로 결과를 보고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샘플검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단위와 인원은 반드시 국가유관 비밀보장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샘플검사 감독결과는 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제34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요식 서비스업 식품안전 감독관리 샘플검사 업무 중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할 권리를 가지며, 보고를 접수한 부문은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정황을 신고인에 고지해야 한다.  **제35조** 표본추출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표본추출 단위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하고 상급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에 비안한다. 만약 표본추출 단위가 규정위반 행위를 명백히 인식함에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상급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통보 및 지적한다.  검사업무 규정위반에 대해,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검사결과 부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및 유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제6장 부 칙**  **제37조** 본 규정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8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기타 관련 감독샘플검사 업무를 전개할 때, 본 규범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39조** 본 규정은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식품분석방법학 검증  　2. 샘플검사 감독 서류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성과 자체평가 요구사항 |  | **关于印发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规范的通知**  国食药监食[2010]342号  各省、自治区、直辖市食品药品监督管理局，北京市、福建省卫生厅（局）：  为加强餐饮服务食品安全监管，规范监督抽检工作，根据《食品安全法》、《食品安全法实施条例》、《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制定了《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规范》，现予印发，请遵照执行。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二○一○年八月二十三日  **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  **工作规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餐饮服务食品安全监管，规范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根据《食品安全法》、《食品安全法实施条例》和《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管理办法》等法律、法规和规章，制定本规范。  **第二条**　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是指餐饮服务食品安全监管部门对餐饮服务提供者所使用的食品（含原料、半成品和成品）、食品添加剂、食品相关产品、餐饮服务场所和环境等依法进行抽样和检验的活动。  **第三条**　食品药品监管部门开展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应当坚持依法、科学、客观、公正的原则，严格遵守本规范。  **第四条**　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应当按成本价购买所抽取的样品，不得收取被抽检单位的检验费和其他任何费用。  **第二章　计划和方案**  **第五条**　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的重点是：  　　（一）餐饮服务提供者使用的主要食品原、辅料；  　　（二）餐饮服务提供者使用的食品添加剂和食品相关产品；  　　（三）餐饮服务食品加工经营的重点环节；  　　（四）食物中毒事件报告较多的业态和场所；  　　（五）对人体有潜在危害、对其安全性必须严格控制的物质。  **第六条**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根据国家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和食品安全监管部门食品安全风险通报、食品安全调查与评价结果以及餐饮服务食品安全监管工作需要，制定国家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计划。  **第七条**　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应当根据国家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计划和本区域餐饮服务食品安全监管工作中发现的突出问题，有针对性地制定本区域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方案，开展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  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应当在规定时间内将本区域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方案报送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第八条**　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方案至少应当包括下列内容：  　　（一）承担抽样任务的监管机构、负责人及其负责的抽样区域等；  　　（二）承担检验任务的技术机构、负责人及其负责的检验任务等；  　　（三）抽检样品的种类、来源、批次、频次和检验项目等；  　　（四）采样方法、抽样量、样品封装、传递和储运条件等；  　　（五）检验方法标准和检验依据或其他判定标准等；  　　（六）结果汇总和报送机构；  　　（七）完成时间和结果报送日期。  **第九条**　建立餐饮服务食品安全调查评价与监督抽检联动机制。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及时将食品安全调查与评价执行过程中发现的餐饮服务食品安全隐患通报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应当根据通报，确定重点地区、重点环节、重点产品和重点危害因素，及时开展监督抽检。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根据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中发现的问题和隐患，结合社会经济发展需要，可适时调整食品安全调查与评价的区域、环节、品种、项目和频率等。  **第十条**　建立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与执法联动机制。对经确认不合格的样品或按程序进行复检后仍不合格的样品，食品药品监管部门应当及时依法查处。  **第三章　抽　样**  **第十一条**　监督抽检实行抽、检分离制度。抽样任务主要由当地食品药品监管部门或其执法机构负责。检验任务主要由依法取得资质认定的食品检验机构负责。根据需要，食品药品监管部门可以要求检验机构协助进行抽样和样品预处理等工作。  **第十二条**　抽样人员不得少于2名。抽样人员在抽样前应当向被抽检单位出示证件和监督抽检通知书，并告知监督抽检的性质和抽样内容等。  　　抽样人员应当准确、客观、完整填写《产品样品采样记录》或《非产品样品采样记录》，并分别加盖食品药品监管部门和被抽检单位公章，且由抽样人员和被抽检单位在场人员签字。被抽检单位无公章或无法现场盖章的，由被抽检单位负责人或者其授权的人员签字确认。  现场无法抽取到样品的，应当由被抽检单位出具抽样未果证明。  **第十三条**　抽取样品时，抽样量应当不少于检验需要量的3倍。对于均匀性较好的样品，应当现场分为三份，一份检验，两份留样；对于均匀性不好的样品，抽样量应当满足实验室处理分样的需要，检验前将抽取的样本分为三份，一份检验，两份留样，并做好分样操作记录。  　　食品安全国家标准对抽样量有特别规定的，依照其规定。  **第十四条**　被抽检单位遇有下列情况之一的，可以拒绝接受抽样：  　　（一）抽样人员少于2人；  　　（二）抽样人员应当携带的监督抽检通知书和证件等材料不齐全；  　　（三）被抽检单位或抽检品种等与监督抽检通知书不一致；  　　（四）抽样日期超过监督抽检通知书有效期限。  **第十五条**　被抽检单位无正当理由而拒绝抽样，抽样人员应当向被抽检单位告知拒绝抽样的后果和处理措施。如果被抽检单位仍拒绝抽样，抽样人员应当现场填写拒绝抽样说明书并签字，及时向当地食品药品监管部门报告，由当地食品药品监管部门按抽检不合格处理。  **第十六条**　抽取的样品应当严格按照样品的物理、化学和生物学等特性，或其标签标识上注明的储运条件储藏运输，以确保样品在检测前的完整性和原始性。在样品储运过程中，应当配备温、湿度测量仪表，建立温、湿度测量记录。  **第四章　检　验**  **第十七条**　承检机构应当具备食品检验机构资质，并由制定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方案的食品药品监管部门遴选和公告。  **第十八条**　食品检验机构接收样品时应当有专人负责检查、记录样品的外观、状态、封条有无破损及其他可能对检验结果或者综合判定产生影响的情况，并确认样品与采样记录是否相符，对检验样品和备份样品分别加贴相应标识后入库。必要时，在不影响样品检验结果的情况下，可以将样品进行分装或者重新包装编号。  **第十九条**　样品的前处理应当严格按照检验方法标准的要求进行，样品处理量应当能满足方法检测限的要求。  **第二十条**　食品检验机构应当遵循检验规程，按照监督抽检方案中规定的方法和依据进行检验和判定。检验方法应当采用食品安全国家标准中规定的方法或其他具有法律效力的检验方法。  **第二十一条**　承检的食品检验机构应当按照相关要求，对检测方法进行方法学验证，按照相应标准建立本实验室的标准操作程序，并经食品检验机构技术负责人审核发布。  **第二十二条**　在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中，可以采用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认定的快速检测方法进行初步筛查。  　　对初步筛查结果表明不符合相关食品安全标准的，可采取临时控制措施，并依照《食品安全法》第六十条第三款的规定进行检验。  　　快速检测方法的认定办法另行规定。经认定的快速检测方法，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公告。  **第二十三条**　食品检验机构未经委托检验部门同意，不得分包、转包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任务。  **第二十四条**　检验过程中遇有样品失效或者其他致使检验无法进行的情况时，必须如实记录，经食品检验机构的质量负责人签字确认，并具有相应的证明材料。  **第二十五条**　检验数据处理应当遵循测量误差与数据处理技术规程。  **第二十六条**　检验结果接近限量标准的临界值时，承检的食品检验机构应当重新选择实验室备份样品安排复检，复检结果为最终结果。  **第二十七条**　食品检验机构应当将检验结果及时报送委托检验的食品药品监管部门。对检验结果不合格的，还应当附具检验报告。  **第二十八条**　被抽检单位对检验结果有异议的，应当自收到检验结果告知书之日起10日内，向委托检验的食品药品监管部门提出书面复检申请，逾期则视为认同结果。  复检依照《食品安全法实施条例》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的规定执行。  **第五章　监督管理**  **第二十九条**　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执行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下达的监督抽检任务，应当按照相关要求向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提交样品登记汇总表、抽检结果汇总表、不合格样品汇总表和不合格被抽检单位名录等材料，并编制监督抽检年度总结报告。  **第三十条**　监督抽检的结果公开应当严格遵循《食品安全法》和《食品安全法实施条例》中关于食品安全信息管理的规定，并按照本规范规定的程序，对不合格样品进行确认后方可发布。  　　抽检不合格产品涉及其他监管环节的，应当按照法律法规要求，将抽检结果通报有关监管部门。  **第三十一条**　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应当根据相关要求，对项目执行情况进行绩效自评，并在项目总结时，将自评报告报送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在项目完成3个月内，组织开展项目绩效评价与考核。  **第三十二条**　参与监督抽检的工作人员应当严格遵守国家法律法规，恪守职业道德，秉公执法，廉洁公正，不得弄虚作假。检验人员应当独立按时完成任务，保证出具的检验数据和结论客观、公正，不得出具虚假的检验报告。  **第三十三条**　承担监督抽检任务的单位和人员应当严格遵守国家相关保密规定。监督抽检结果未经管理部门许可，不得向任何单位和个人泄露。  **第三十四条**　任何单位和个人对餐饮服务食品安全监督抽检工作中的违规违法行为，有权向食品药品监管部门举报，接受举报的部门应当及时组织调查处理，并将调查处理的情况告知举报人。  **第三十五条**　对违反抽样工作规定的，由抽样单位做出相应的处理，并报上级食品药品监管部门备案。如抽样单位明知有违纪行为而不做处理的，由上级食品药品监管部门责成其做出处理并给予通报批评。  　　对违反检验工作规定，伪造检验结果，或因出具检验结果不实而造成损失的，依照《食品安全法》及相关法律法规的规定做出处理。  **第三十六条**　地方食品药品监管部门无正当理由未按时间要求上报数据结果的，由上级食品药品监管部门责令整改。  **第六章　附　则**  **第三十七条**　本规范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负责解释。  **第三十八条**　食品药品监管部门开展其他相关监督抽检工作，参照本规范执行。  **第三十九条**　本规范自发布之日起施行。  　　附件：1.食品分析方法学验证  　　　　　2.监督抽检文书要求  　　　　　3.项目绩效自评要求 |